

# 정 관

케이비발해인프라투자회사

## 제 1 장 총 칙

2006년 1월 24일 제정  
2007년 12월 6일 개정  
2009년 4월 23일 개정  
2017년 1월 1일 개정  
2017년 4월 27일 개정  
2021년 1월 24일 개정  
2021년 7월 30일 개정  
2021년 11월 19일 개정  
2022년 3월 11일 개정  
2022년 7월 28일 개정  
2024년 8월 14일 개정

**제1조 (상호 및 종류)** ① 이 회사는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B Balhae Infrastructure Fund’(약칭 KBIF)라고 표기한다.

② 이 회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다.

③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22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및 동법 제9조 제18항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보유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민간투자법 제2조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주식, 옵션, 조합 및 합작투자 지분의 취득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않음)
2.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무증서(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기타 유사한 형태의 채무증서를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않음)의 인수
3.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용자
4. 민간투자법 및 자본시장법(및 그 개정법률)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기

타 운영, 활동 및 사업

5. 본 정관에서 “투자”라 함은 회사가 수시로 하는 모든 투자로서 본 정관에 언급된 유형의 투자를 의미한다.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본점 이외의 별도의 영업소는 두지 아니한다.

**제4조 (직원의 채용)** 이 회사는 직원 및 상근 임원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bif.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폐간, 휴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둘 이상의 신문에 공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 제 2 장 주 식

**제6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십억주(4,000,000,000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백만주(1,000,000주)로 하며, 일주의 발행가액은 일만원(10,000원)으로 한다.

**제8조 (최저순자산액)** 이 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순자산액은 오십억원(5,000,000,000원)으로 한다.

**제9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무액면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10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1조 (자기주식의 취득제한 등)** ① 이 회사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때, 관계법령에 의해 특별히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지체없이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1. 주식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기타 법규상 허용되는 적절한 방법을 통한 매각

**제12조 (환매청구의 제한)** 이 회사의 주주는 이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본 정관이나 관계법령에 의해 특별히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주식의 상장 등)** 이 회사는 회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이나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

**제14조 (주권의 발행 및 예탁)** 이 회사는 회사의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주식을 전자등록한다.

**제15조 (신주발행)** ① 회사가 본 정관의 효력발생일 이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가 다음 각호의사항을 결정 한다.

1. 발행하는 신주의 수
2. 발행가액 및 주금 납입기일을 정하는 방법

② 신주인수의 청약에 의한 주식배정의 수는 납입금액을 1주당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결정한다.

③ 본 정관에서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로서 한국의 은행의 영업일을 말한다.

④ 주식의 청약 단위는 일주 단위로 한다.

⑤ 회사가 유무상증자 또는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단, 회사가 (가) 제55조 제2항에 따른 초과분배 및/또는 (나) 제55조 제4항에 따른 수시(중간)배당에 따른 각 기준일의 익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 내에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해당 기준일의 초과분배, 수시(중간)배당 부분은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시 고려하지 아니하고, 위 (가) 또는 (나)의 경우 신주 발행 이후 추가 초과분배나 결산배당시 기존 주식 1주당 이익분배금과 신주 1주당 이익분배금은 동일하다.

#### **제16조 (삭제)**

#### **제17조 (삭제)**

**제18조 (주식의 명의개서 등)**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회사와 일반사무관리계약을 체결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위임한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를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내지 제5항에 기재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각 해당 조항과 같다.

#### **제19조 (삭제)**

**제20조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말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다.

### 제 3 장 주주총회

**제21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회사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이사회에 요청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1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후 1월 이내에 이사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금융위원회(금융위원장에 위임된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을 의미한다. 이하 본 정관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는 이사회에서 소집하며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3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인이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제38조 2항에 따라 선임하여 직무를 위임한 법인이사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다.

② 법인이사의 대표자 혹은 전항에 규정된 소속 임직원이 불출석하거나 기타 유고 등 사유로 주주총회의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감독이사 중 1인이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25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발언시간 및 회수의 제한, 발언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는 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27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① 주주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의결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간주의결권행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8조 제6호 내지 제9호에 따른 주주총회 의결의 경우 간주의결권행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주에게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에 따라 본 정관에 따른 간주의결권행사방법을 포함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 하였을 것
  2.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의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3. 간주의결권행사요건의 충족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주주에게 통지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이 회사에서 송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한다.
- ④ 제2항의 제출서면은 주주총회일로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공시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주주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이사, 감독이사의 선임
2. 제49조 제1항에서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 또는 사채발행
3. 이사회에서 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에 부의한 사항
4. 신탁업자의 선정 및 변경(변경이라 함은 새로운 신탁업자의 선임 또는 기존 신탁업자의 해임을 의미하며, 동일한 신탁업자의 재선임은 제외한다.)
5.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받는 보수의 인상
6.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정관의 변경
7. 이사의 해임
8. 회사의 해산, 합병
9. 집합투자업자의 선정 및 변경(변경이라 함은 새로운 집합투자업자의 선임 또는 기존 집합투자업자의 해임을 의미하며,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재선임은 제외한다.)
10. 기타 자본시장법,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제29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3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1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법령 및 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제28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보통결의”)가 있어야 한다.
- ② 제28조 제6호 내지 제8호의 사항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 ③ 제28조 제9호 사항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 ④ 제28조 제10호의 주주총회 결의는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에 의한다.

**제32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제 4 장 이사·이사회

- 제33조 (이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 ② 법인이사의 수는 1인으로 하며, 감독이사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한다.
- ③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집합투자업자인 “(주)KB자산운용”을 법인이사로 선임한다.

- 제34조 (이사의 선임)** ① 감독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5조 (감독이사의 결격사유)** ① 자본시장법 제199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감독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 ② 감독이사로 선임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에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감독이사가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36조 (이사의 임기)** ① 법인이사는 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의 자격을 유지하는 한 별도의 임기를 정함이 없이 법인해산시까지 법인이사직을 수행한다.

② 감독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37조 (이사의 보선)** 이사가 결원되어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38조 (법인이사의 직무)** ① 법인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매 3월마다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운용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법인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범위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이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에 통보된 자가 직무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제39조 (감독이사의 직무)** ①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이 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이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 (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법인이사와 감독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다.

② 이사회는 법인이사 또는 감독이사가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 (이사회 의 직무)** 이사회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며, 3개월마다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보고 받은 자산운용내역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 결산기를 기준으로 1회 이상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단, 이사회 의 권한 행사는 주주간 계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
2. 신주의 발행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판매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의 체결 및 변경
4. 자산의 운용·보관 등 업무위탁과 관련한 제비용 및 보수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회사설립 후 투자회사 등록 전까지의 일시적 자금운용, 집합투자업자 교체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운용 등 이 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회계감사인의 선정
7.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
8.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9.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판매회사의 선정 및 변경
10.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판매회사가 받는 보수의 인상
11.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본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제42조 (이사회 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 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 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44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법인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없다.

② 감독이사의 보수는 각 연간 1 억원을 한도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 5 장 업 무

**제45조 (자산운용의 범위)** ① 이 회사는 본 정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유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투자·운용한다.

1.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취득
  2.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채권의 취득
  3. 민간투자법상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의한 투자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5.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투자
- ②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46조 (삭제)**

**제47조 (여유자금의 운용)** 이 회사의 여유자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공채의 매입
3. 민간투자법 제43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국채·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

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4.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투자

**제48조 (업무의 위탁 및 보수 지급)** ① 이 회사는 보유자산의 운용, 보관, 발행주식의 판매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련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각 수탁회사와 체결할 위탁계약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운용위탁계약

가. 이 회사의 자산을 위탁 받아 운용한다는 내용

나. 자산운용규모 및 운용의 대상 등 제반 운용조건에 관한 내용

다. 연간 지급할 운용보수 및 계약기간

라.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와 상장 이후 필요한 제반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

마. 운용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등

2. 자산보관위탁계약

가. 자산운용에 따라 이 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산의 보관 및 기타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나. 연간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

다. 업무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등

3. 일반사무위탁계약

가. 이 회사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 운영에 관한 사무, 계산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한다는 내용

나. 연간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

다. 업무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등

③ 각 위탁계약의 수탁자는 **별첨**에 기재된 보수를 받는다.

**제49조 (자금의 차입 등)** ① 이 회사는 운영자금이나 투자목적자금의 조달 등 목적을 위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다만, 민간투자법 제41조의5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그 허용되는 비율)을 한도로 자금을 차입(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의결로

같음한다.

② 이 회사는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투자대상회사의 주식 등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의2 (사채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등)** 이 회사는 사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또한 제18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사채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 6 장 계 산

**제50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1조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 이 회사의 법인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법령에 따라 감사를 필요로 하는 기타 서류

② 법인이사는 이사회 개최 1주 전까지 제1항의 결산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

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자본시장법 제238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본 조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53조 (기준가격의 계산)** ① 회사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기준가격은 산정일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산정일 전일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1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제54조 (자산의 운용비용 등)** ① 회사 자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하며, 회사를 대신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이를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이 회사의 투자자산의 취득, 처분, 보험, 보관 및 기타 처리를 위한 비용
2. 어떠한 제안된 투자의 취득, 처분 및 기타 처리를 위한 비용(관련 법률자문, 금융자문 기타 기술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3. 이 회사의 보유유가증권의 등록 또는 투자자산 및 이 회사의 전체의 가치평

가와 관련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 회사의 투자자산 및 채무에 관한 일반사무  
관련비용

4. 이 회사의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인수수수료, 등록수수료 등 거래비  
용 및 이 회사의 투자와 관련하여 세무당국에서 부과하는 제반 조세공과금
5. 이 회사의 투자자산 취득 및 자산운용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조달을 준비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
6. 이 회사의 투자자산과 관련한 소송, 중재 및 기타 쟁송절차와 관련한 비용  
(다만, 법원의 결정, 판결에 의해 집합투자업자가 자산운용위탁계약상의 의  
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프로젝트 서류 및 어떠한 증권발행관련 서류, 차입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이  
회사의 투자와 관련한 서류상의 진술 및 보증의 부정확 또는 진실에 반함으  
로써 발생하는 쟁송과 관련한 손해배상 기타 비용(그러한 쟁송이 집합투자  
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요구 또는 요청의 준수와 관련한 비용
9. 이 회사 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비용
10. 이 회사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되는 비용
11. 회사의 상장 추진/관리 비용(상장증권사 주선/인수수수료, 자문(발행인/인수  
인)수수료, 상장수수료, 시스템 개발/유지비용, 기타 상장추진과 관리에 소요  
되는 비용) 및 거래소 규정 준수를 위한 비용 등
12. 민간투자법, 자본시장법, 상법 등 관계법령과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주주에 대한 통지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
1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에 준하는 비용으로 회사의 운영 및 회사 자산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제55조 (이익분배 등)** ① 이 회사는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회의 결정에 따라 자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이를 주  
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자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결의하여야 하며, 동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  
일 현재 주주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이사회에서 정한 일자(“지급일”)까지 지급  
하여야 한다. 지급일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일

현재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제8조에서 정한 최저순자산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분배가능금액”) 내에서 분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그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이사회에서 금전의 분배를 결의하는 경우 동 결의에는 분배가능금액 및 그 산정방법, 실제 분배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분배가능금액은 당해 결산기말 현재 위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당해 금전분배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결산기 금전의 분배와는 별도로 필요에 따라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단, 이사회가 추가 분배가 필요하다고 결의하는 경우 추가 분배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수시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기준일을 정하고, 그 기준일 현재 주주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그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분배가능금액 내에서 금전을 분배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 금전의 분배를 결의하는 경우 지급시기는 당해 금전분배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⑤ 이 회사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금전분배에 관한 계산서에 근거하여 이익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 제56조 (삭제)

## 제 7 장 해 산

제57조 (해산)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삭제)
2. 주주총회의 의결
3.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금융위원회로부터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7. 회사의 모든 투자자산의 매각·회수 또는 처분

8. (삭제)

9. 기타 관계법령에서 이 회사의 해산사유로 정한 사유

② 제1항의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다만,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는 경우 동 개정규정에 따른다)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58조 (삭제)

**제59조 (잔여재산의 분배)** 회사가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회사 자산을 구성하는 투자는 금전으로 환금한 후 회사의 자산(직전 사업연도의 이익금과 자본금을 포함한다)으로 모든 비용 등을 지급하고 회사가 청산감독인과 상의를 거쳐서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불확정 채무 및 책임에 대한 적립을 마친 후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되, 그렇게 분배되지 않는 부분은 현물로 주주에게 분배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재산은 수차에 걸쳐 나누어 분배될 수 있다.

## 제 8 장 보 칙

**제60조 (정관의 변경)** ① 본 정관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31조 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3.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해산사유의 변경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9조로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의결로 변경한 경우: 명의개서 대리인을 통한 주주에의 통지 및 공시
2. 주주총회 의결 없이 변경한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

시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그 밖에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61조 (법규의 적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민간투자법, 동 시행령, 자본시장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및 상법 기타 법령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제62조 (존립기간)** 이 회사의 존립기간은 이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회사의 해산 또는 청산시까지로 한다.

**제63조 (합병)**

회사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법인이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제64조 (영업보고서 등의 제출)** 이 회사는 민간투자법,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다.

**제65조 (삭제)**

**제66조 (설립비용)** 이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은 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원) 이하로 한다.

**제67조 (발기인의 성명, 주소)** 본 정관을 작성하고 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해 온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강 정 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2.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김 호 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6

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정 채 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
4.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은 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63빌딩
5.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순 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박 관 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7.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배 정 충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150
8.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마누엘 바우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1 알리안츠타워
9.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성 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1번지
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대표이사 정 용 근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11.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 성 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226번지
12.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수 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13. 녹십자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손 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8

14. 주식회사 경남은행 은행장 정 경 득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동 246-1

15. 대한소방공제회 이사장 천 광 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98-3

16. 주식회사 부산은행 은행장 심 훈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30-38

17.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하 종 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78번지

##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200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 1. 24 개정)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 7. 30 개정)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 11. 19 개정)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 3. 11 개정)

(시행일) 본 정관은 2022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28 개정)**

(시행일) 본 정관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8. 14 개정)**

(시행일) 본 정관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 집합투자업자 등의 보수

### 1. 자산운용위탁계약

- (1) 보수 지급기준은 산정 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법령에 의한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에는 산정 기준일의 시가총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 계산일까지(“보수계산기간”) 누적하여 합산한 후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연 0.65%로 한다.
- (2) 수탁회사에 대한 약정보수는 신규 투자약정액의 0.50%로 하되, 해당 투자약정액이 일백억원(₩10,000,000,000)을 넘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약정보수는 발생한 사업연도의 당기 및 차기 사업연도 동안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수탁회사가 회사에게 약정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10] 영업일 또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기간 내에 일시지급하기로 한다.

### 2. 자산보관위탁계약

보수 지급기준은 산정 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법령에 의한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동안 누적하여 합산한 후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연 0.02%로 한다.

### 3. 일반사무위탁계약

보수 지급기준은 산정 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법령에 의한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 동안 누적하여 합산한 후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연 0.02%로 한다.

※ 위 각 보수계산기간은 분기 단위로 하며(단, 최초 보수는 각 계약기간의 개시일부터 해당 분기 말일까지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며, 최종 보수는 해당 분기의 초일부터 각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보수를 일할 계산한다), 계산기간 중 보수는 매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의 익영업일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회사가 회사 재산에서 인출하

여 지급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회사의 해산
3. 위탁계약의 해지